

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

설립인가 절차 상담



설립인가 예비신청 (시행령 제10조, 임의 절차)

- ▶ 지방변회,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 접수
- ▶ 예비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


예비심사

- ▶ 필요시 서류 보완 요청



설립인가 (정식)신청 (법 제35조의3, 시행령 제10조)

- ▶ 지방변회, 대한변협을 거쳐 법무부 접수
- ▶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


설립인가 심사

- ▶ 서류 보완 요청(시행령 제10조 제2항)
- ▶ 관련자료 제출 요청(시행령 제10조 제3항)



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



인가대장 기재
(시행령 제10조 제4항)

지방변회, 대한변협
서면통지
(법 제35조의31)

설립인가증 발급
(시행령 제10조 제4항)



보험 등 가입
(법 제35조의 28)